

# NAJU-SI WEB CONTENTS

---



2019년 06월 25일 15시 54분

# Table of Contents

Table of Contents	2
난임부부지원사업	3
사업목적	3
기본방향	3
지원신청 자격	3
지원횟수 및 금액(2019년 1월 1일 부터 인공, 동결시술비 지원확대)	3
제출서류	3
소득판별 기준표	3
가족수 산정 기준	4
신청 접수처	4

**▶ 사업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 기본방향**

-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생식술 중 인공, 체외(신선, 동결)수정시술 소요 비용 지원
-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
  - 난임치료시술비가 고액이고 수회에 걸쳐 시술해야 하는 등 중산층에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중산층을 포함하여 지원

**▶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진단서 제출자
  - 난임 시술 :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난임진단서'
    - ※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산부인과 전문의의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 이하 자(소득판별 기준표 참조)

**▶ 지원횟수 및 금액(2019년 1월 1일 부터 인공, 동결시술비 지원확대)**

- 지원횟수 : 인공수정 최대 3회,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4회, 동결배아 3회)
- 지원금액
  - 1회당 50만원 범위내

**▶ 제출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보건소에서 작성)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4.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 3 ~ 6의 경우 전자정부법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7.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부부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판별 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단위:원)		
		1인	2인	3인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본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단위: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단위: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단위:원)
2인	5,232,000	169,191	171,897	171,897
3인	6,768,000	228,111	228,111	228,111
4인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인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인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7인	12,913,000	442,043	483,381	487,738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가족수 산정 기준

1. 난임부부와 그 직계존비속 및 난임부부와 그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포함)
2.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직장가입자)
3. 난임부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지역가입자)
4. 난임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 신청 접수처

부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나주시보건소 ☎061-339-2128)

함께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

NAJU-SI WEB CONTENTS



NAJU 나주시